고용·임금 확인서								
피고용자	성명			생년월	일일			
	주소							
	고용성격 (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)							
고용기간			년 월	일부터	년	월	일까지	
임금지급형태		일당제	1일임금 : 원					
			월평균 고용일수 :				일	
		월 급 제				원	월분	월분
			기본급					
			각종수당					
			기타금액 (여비, 자동차유지비등)					
			합계금액					
국민	건강보험 가입여부		마가	ପ 🔲	0	가 입		
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.								
년 월 일								
사 업 장 명: 사업장 주 소: 사업자등록번호: (영업허가번호) 사 업 주 명:			전화번호 : (서명 또는 날인)					
※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49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1000만원이하의 벌금·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								